

##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	2007. 11. 15	조례 제1562호
개정	2009. 8. 10	조례 제1685호
	2009. 9. 28	조례 제1687호
일부개정	2011. 6. 8	조례 제1780호
일부개정	2016. 1. 1	조례 제2157호
일부개정	2016. 3. 16	조례 제2170호
일부개정	2016. 9. 26	조례 제219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6. 11. 18	조례 제2210호
일부개정	2018. 2. 27	조례 제2348호
전부개정	2019. 9. 27	조례 제2525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	2021. 4. 16	조례 제2732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8조제1항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출산축하금”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액을 말한다.
2. “영아”란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기준) 광명시장은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예산의 범위에서 영아 1인당 70만원 이내로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대상) ①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. 다만,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영아 부모의 사망, 이혼,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, 지원대상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.

제5조(지원절차)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「임신·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신청서 1부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, 매달 1일부터 말일

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

까지 신청서를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4. 16>

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,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. <개정 2021. 4. 16>

제6조(환수조치)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

부칙 <2019. 9. 27 조례 제2525호 전부개정>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4. 16 조례 제273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